

겸임교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에 따라 겸임교원의 자격, 임명절차 및 대우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겸임교원의 자격, 임용 절차 및 처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격)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겸임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관련 분야와 유사한 산업체 재직자 중 전공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등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의 국가인정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무형문화재 및 해당 분야 권위자 등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8.12.12.개정)

제4조(임용절차) ① 겸임교원은 소속 정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거나 공개초빙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2016.10.18.개정), (2019.8.28.개정),(2020.2.25.개정)

② 겸임교원을 임용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8.28.개정)

1. 겸임교원 지원서(별지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연구실적 목록(해당자에 한함) 1부
6. 소속기관장의 동의서 1부

③ (2019.8.28.삭제)

④ 겸임교원의 임용은 소속 전공의 회의를 거쳐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2012.5.31.개정),(2016.10.18.개정),(2020.2.25.개정)

⑤ 다만 소속 전공에서는 겸임교원을 심사시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어야 하며, 경력 및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016.10.18.신설), (2019.8.28.개정),(2020.2.25.개정)

제5조(임용기간) ①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용기간의 갱신은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행한다.

제6조(직무) 겸임교원은 주당 12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고, 계약시 기간 및 강의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018.8.24.개정)

제7조(면직) ① 겸임교원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총장이 해임할 수 있다. (2012.5.24.개정)

② 수업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해 교학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면직할 수 있다. (2019.8.28.개정)

제8조(보수) 겸임교원의 보수는 계약으로 정한다. (2019.8.28.개정)

3-3-7 겸임교원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